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
Korea Industrial Waste Landfills Association

발송 No. 2021. 08. 06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

수 신	전 회원사 대표이사 [대표이사 메일 송부 병행문서]
참 조	매립시설 관리담당
제 목	「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기준 마련」관련 환경부 3차 수정(안)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

1. 한매협 2021-35호[「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기준 마련」관련 추가 의견제출 요청[긴급], '21.7.8]와 관련입니다.

2. 환경부와 지속 협의 중이던 "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기준(안)" 마련과 관련하여 '21.7.14(수) 협회 임원진과 환경부와의 간담회 이후 수차에 걸친 의견 조율이 있었으며, 환경부에서 절충안으로써 3차 수정(안)을 붙임과 같이 제시하였기에 귀 사의 **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업계입장을 다시 전달코자 하오니 '21.8.13(금)까지 (FAX : 02-718-7171) 의견을 제출하여** 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: 1.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기준 3차 수정(안) 주요내용 1부.
2.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. 끝.

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장

대 리 **김 정 훈** 기술지원팀장 **한 인 성** 상 무 **장 기 석** 부회장 **김 상 배** 회 장 **강 경 진**
협조자
시 행 한매협 2021 - 40호 (2021. 8. 6) 접수
우 04508 서울시 중구 중림로 50-1(만리동1가, SKY1004빌딩) 13층 / www.kiwla.or.kr
전 화 02-718-7900 전 송 02-718-7171 / krema@krema.kr / 비공개

붙 임 1

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기준 3차 수정(안) 주요내용

1 그간의 경과

○ '18.11.14 : 환경부 사후관리 종료기준 마련 **연구용역 결과 도출**

- 침출수 원수 수질 **3년 연속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수위 30cm 이하 유지**
- 침출수 **미발생 시** 매립폐기물 **용출액 수질**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준수

○ '18.12.14 : 협회, 연구용역 결과 **반대의견 제출**

- 캡핑된 매립시설 특성상 배출허용기준 및 수위 기준 준수 불가**(수용 불가)**

○ '21.06.08 : 환경부, 사후관리 종료기준 마련 착수 / 협회, 회원사 대상 1차 의견제출 요청

○ '21.06.11 : 환경부, 사후관리 종료기준 마련 **전문가 회의 협회 참석**

- **환경부 1차 제시(안) 수용 불가 입장 전달** / 업계 수용가능한 기준 제시 요구

○ '21.06.29 : 협회, **1차 건의의견 제출**

- 침출수 원수 수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불가능, 수위 2m 이하 유지로 상향 요구
- 침출수 **미발생 시** 매립폐기물 **용출액 수질**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삭제 요구

○ '21.07.06 : **환경부, 2차 수정(안) 제시 / 수용불가 입장 전달**

- 침출수 원수 수질 **3년 연속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수위 2m 이하 유지**
- **침출수 채취가 곤란한 경우** 매립폐기물 **용출액 수질**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준수

○ '21.07.08 : 협회, 회원사 대상 2차 의견제출 요청

○ '21.07.12 : 협회, **2차 건의의견 제출**

- 침출수 원수 수질 **3년 연속 배출허용기준 준수 또는 수위 2m 이하 유지**
- 침출수 **미발생 시** 매립폐기물 **용출액 수질**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삭제 요구

○ '21.07.14 : **강경진 협회장 및 임원진과 환경부 주무과장 간담회 개최(환경부)**

- ① 매립시설 **구조적 안정 강화는 수용가능**하나 침출수 원수 배출기준 및 수위 기준 준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, ② **검사기관 또는 전문업체 진단**으로 사후관리 종료 판정토록하여 **객관성 확보**도 필요, ③ **사후관리 토지이용 확대** 동시 추진으로 **방치·도주 매립업자 발생 방지 필요**, ④ 준수 불가능한 기준 마련 대신 **현행 기준 유지 등 제시**

○ '21.08.03 : **환경부, 3차 수정(안) 제시**

2 환경부 3차 수정(안) 주요내용

○ ① 침출수 원수의 수질이 별표 11제2호나목2)가)의 **배출허용기준을 3년 연속 만족**하거나, ② **침출수 수위**가 별표 19 제3호나목3)의 **기준(2m)을 만족**하면서 ③ 동시에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**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침출수 발생량 및 수위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사후관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침출수 수위가 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될 것**

※ **침출수 채취 곤란(미발생) 시** 매립폐기물 **용출액 수질**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**삭제**

〈 문구 해석 〉

① 침출수 **원수 수질 배출허용기준 3년 연속 만족 또는**

② 사후관리 종료 신청 시점 **침출수 수위는 2m 이하를 만족하면서, ③ 매립시설 검사기관**이 침출수 발생량 감소 추이를 분석하여 5년 이내에 침출수 수위가 0에 도달할 것으로 **예측한 분석결과를 제출**해주면 **사후관리 종료 가능**

3 향후계획

○ 강경진 협회장 및 임원과 연구용역자 **이남훈 교수 업무협의**

○ 5년 이내 침출수 수위 0 도달 가능여부 매립시설 **검사기관들에게 사실관계 확인**

○ 회원사 의견과 검사기관 사실관계 확인 취합한 **최종입장 회원사 의견 수렴 후 환경부 제출**

붙 임 2

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기준(안)에 대한 추가 건의의견

환경부(안)	수정 건의(안)	사 유

2021. 8. .

업 체 명 :

대 표 자 : (인)

담 당 자 :

한 국 산 업 폐 기 물 매 립 협 회 귀중